

#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노진거\* · 정일홍\*

## 요 약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etective System)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

Noh Jin Geo\* · Jeang Il Hong\*

### ABSTRACT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etective system, policy alternative**

접수일(2016년 10월 18일), 수정일(1차: 2016년 10월 24일),  
계재확정일(2016년 10월 25일)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1.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보화 및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대하였으며,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능은 증대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만큼 국내·외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과 각종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1].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국가의 기능을 아무리 확충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국가가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실정이라 할 수 있다[2].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판단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매년 일정한 비율의 미제사건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게 되며 복수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다수의 미제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 법집행기관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3].

이처럼 범죄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해결사들을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편법적인 조사는 또다시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 및 OECD 가입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민간 사설탐정제도가 있어 민간이 어려운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OECD 가입 국가들의 사설탐정제도도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의 혜택이 민간의뢰인에

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전, 공공법 집행조직과 민간경비 조직 간의 협력 등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생활 뒷조사, 개인정보 거래, 청부폭력 등 불법행위 40여건 적발하고 총 332명을 처벌하였다[4]. 그런데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그 자체는 용역을 제공해 주는 합법적인 업종이고 또한 특별한 행정규제가 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확보하기 전에는 경찰관이 심부름센터를 찾아가거나 이것저것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한다. 2012년 12월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1,600여 개의 심부름센터, 홍신소, 인터넷 고민해결 관련사이트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현재시점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업체들이 개소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최근 도청, 미행, 개인의 뒷조사나 청부 폭력 더 나아가 청부살인까지 서슴치 않고 있고, 심부름센터 및 홍신소 등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심부름센터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자격증 등을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상호경쟁적으로 불법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5]. 이러한 문제는 물론 1999년부터 꾸준히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하다가 2014년 3월에야 박근혜 정부는 44개를 선정해 신직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설탐정으로 알려져 있는 ‘민간조사원’을 포함시켰다.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한바 있는 직업군을 국내에서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정부에서 주도하여 직업 육성,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라 민간조사(탐정)업을 신 직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민간조사(탐정)업을 신 직업으로 발굴 계획이 실행되어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절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현실에서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형태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발생했던 문제와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신직업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제도 및 민간조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 수단과 더불어, 향후 공인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공인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운용 실태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발달한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질충법계인 일본의 운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국가의 입법형태, 업무범위,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1 미국

미국은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건에 민간조사원이 관여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현대 미국에는 6만 여명의 공인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공경찰과 사경찰(민간경비)의 경찰시스템을 갖고 있다. 공경찰은 공공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부기금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반면, 민간경비는 고객에 따라 운영된다. 현재 민간경비 인력은 공경찰의

두 배에 달하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6].

미국은 연방제를 기초로 한 지방분권 국가이므로 민간조사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연방에서보다 주(州)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조사 산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조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7].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탐정업 관련 법률의 명칭이 「탐정업, 보석집행관, 감시·경비·순찰 업체 및 보안요원의 면허에 관한 법률(Private Investigators, Bail Enforcement Agents,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and Security Guards Licensing Law)」이며, 탐정업과 다른 민간보안산업에 관련된 면허와 업무 규정 등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미국 정부가 탐정업과 같은 민간의 사업에 대하여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또한 민간조사업(탐정업)을 포함한 민간보안산업에 대하여 비슷한 관련 업종의 전문직들을 동일한 법률에 같이 규정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 2.2 영국

영국은 각 지역별로 자치경찰을 발전시켜 주민참여 및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찰체제가 정착되어 있는데, 탐정들의 활동은 이러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경찰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제나 규정이 없었으므로 조사업무나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직 경찰이나 군인들이 탐정의 대부분이었다. 탐정의 기법이나 지식들을 교육하는 탐정학교들이 많기에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다.

탐정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업종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탐정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은 소위 상업정보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다. CIA라고 불리는 상업정보회사들은 기본적으로는 탐정과 비슷한 일을 하

지만 국내 및 해외 도피범이나 도피자산 추적, 비즈니스 정보수집, 잠입근무 등의 경제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이다[8].

영국에서의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서, 그 대상은 개인고객도 있지만 주된 고객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사무변호사(Soliciter)이다. 보험회사가 고객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조사, 산재조사 등을 하면서 보험금의 부정취득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그 증거를 수집 하는 등 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많다. 기업 상대의 업무로는 합병이나 인수 등의 제휴 예정 기업들의 신용조사나 직원 고용 시의 배경조사를 주로 한다.

### 2.3 프랑스

프랑스의 민간조사제도는 2003년 이전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원이 될 수 있는 신고제 방식이었다. 개업하려는 민간조사업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개인신고와 동시에 본사의 주소와 고용하는 민간조사업소장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만 하면 개업이 가능했다[9]. 그러나 2003년 3월 「안정 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이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경비업과 함께 민간조사업업을 규정하면서 민간조사업은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의 인가제도와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여 민간조사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탐정이나 법인사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 개정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에 의해 시큐리티에 대한 세계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다른 EU국가에서의 민간조사업법 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10]. 같은 법 제20호는 민간조사원의 업무에 대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자유로운 업무라 규정하고 있다[11]. 프랑스의 민간조사업무에서는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탐정회사에서는 사내 범죄조사, 신용 및 신변조사, 보험사기조사 등의 기업대상 조사를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작은 탐정사업자는 결혼, 이혼, 양육비 관련 조사나 소재파악 등의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4 일본

일본은 민간조사원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면허는 없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업업을 할 수 있다[12]. 그러나 홍신소 및 민간조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사, 개인정보 유출, 불법 도청 등이 만연하게 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6년 6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무관청인公安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 탐정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 등 여타 보안산업 관련업종과 더불어 탐정업을 통합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일본은 탐정업을 독립적인 하나의 단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본사회에서 탐정업체나 홍신소 등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던 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 수행함에 있어 수반될 수 있는 사생활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물론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 따라 개별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결하지만, 업무범위에 탐문, 미행, 잠복 등의 구체적인 행위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수권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일본의 민간조사원은 불륜, 소행 등의 행동조사, 가출인 및 실종자의 사람 찾기, 개인과 기업의 신상 및 신용조사, 증거조사 등 광범위한 대상을 업무로 하고 있으나, 대다수 탐정소가 소규모 인원으로 불륜, 소행, 결혼상대자 조사 등 행동조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14].

일본에서는 탐정업무가 포괄적인 것만큼 개인 자신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탐정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탐정협회에 의뢰한 내용의 빈도를 보면 불륜이나 변심 여부 조사, 개인의 신용도 조사, 사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배임

이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자식의 행동 조사나 이지메나 스토키에 대한 조사, 사원(社員)의 행동 조사 등의 의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분석 및 대안

#### 3.1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 분석

민간조사제도와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 중 도입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와 그 범위, 관할 주체, 조사원의 구성과 활동[15], 입법방식에 대해 논의하였고, 입법형태, 관리감독, 업무범위, 자격기준에 대해[16], 국가치안을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제도를 통하여 인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안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17]고 주장하였다. 법제정 목적, 정의, 업무범위, 자격시험 및 결격사유에 대해[18],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시험과목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19]을 하였다. 이상원은 2007년의 연구에서 민간조사원들의 윤리성이 강화될 때 고객들의 신뢰가 있게 되고, 민간조사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008년에 민간조사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의 민간조사 교육훈련제도를 소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격, 시험제도, 현장교육훈련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조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의 엄격한 적용, 사후 평가 및 감독 등의 준비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간조사제도를 합법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조사업법(안)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민간조사의 주체를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하여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체, 허가, 업무범위, 자격시험, 감독기관 및 벌칙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21].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선진국 사례 소개와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입법화를 논의하였으며[22], 민간조사업의 자격제도, 업무범위, 교육 및 담당기구, 관리감독기구에 대해[23], 은 이상

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의 국회 발의안을 분석하여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과 감독기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24].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정일석 및 박지영(2009)도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경찰청 산하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26].

위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자격제도 및 시험, 자격교육,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7개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앞의 표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명칭, 업무범위,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들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자들의 쟁점 사항에 모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

#### 3.2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비교를 통한 쟁점분석

외국의 민간조사제도는 형성 배경은 각기 다르나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 등에 대한 방지와 업무의 적정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등 관리가 철저한 점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현재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민간조사 제도에서 좋은 점은 수용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기틀을 삼을 수 있겠다.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입법형태, 업무범위 및 관리감독은 미국은 주마다 민간조사원에 관련된 법이 각기 달랐으나, 많은 주에서 공인면허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책임보험

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이는 손해 배상에 대한 대책의 마련과 더불어 민간조사원 스스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제도로 보아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그동안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원이 될 수 있었는데, 2001년 9·11테러이후 보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이 사립양성기관에서 교육을 행하는 것과 다르게 파리의 대학에 민간조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고급화된 민간조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이 없이 부업처럼 민간조사활동이 가능하였다. 이에 사설탐정양성학원이 성행하고, 고소득 전문부업직종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법률에 의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제정으로 인해 문제시되었던 사생활 침해나 의뢰인에 대한 협박 등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다.

자격요건에 있어 미국은 미국시민권자여야 하며, 25세 이상의 연령이며 고졸 혹은 동등이상의 교육을 수료한자이어야 하나, 영국과 호주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시험과 면허에 있어서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민간조사제도를 전문적으로 인정가능하며,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인정가능한 직업이 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교육훈련 부분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증 발급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졌다. 이는 민간조사원이 전문적으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알 수 있다.

### 3.3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

#### 3.3.1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명칭

국내 민간조사업의 명칭이 ‘민간조사관(이인기 의원)’, ‘민간조사원[26]’, ‘탐정[27]’이 대두되고 있다. 각 연구자들이 타당한 논리 하에 명칭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장현석 및 이상원(2014)의 연구결과에 동의하여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탐정(探偵)’이란 명칭은 민간조사 업무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게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전문적·합법적 조사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영어권 국가에서는 ‘Private Investigator’와 ‘Private Detective’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권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서 경찰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Detec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사용과 정의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분분하다.

그러나 흔히 ‘Private Investigator’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는 우리 언어의 ‘탐정’이라 할 수 있고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민간(사적) 조사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탐정업무는 물론 ‘탐정’이라는 용어의 상업적인 사용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지난 2005년에 발의된 민간조사업 입법안과 일부 단체, 관련업체 및 협회에서 ‘민간조사원’ 혹은 ‘Private Investigator’의 약자인 ‘PI’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탐정’의 과거의 부정적·비현실적 시각을 일소시키고 국가의 통제와 단속을 우려한 나머지 ‘탐정’이라는 용어 대신 ‘민간조사원’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사관이나 조사관이란 명칭은 경찰, 검찰, 군 등과 같은 국가 수사기관에 근무하면서 수사나 조사업무를 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직책 중에는 ‘탐정’이라는 공식 직책이 없으므로 탐정은 국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직책을 맡은 이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사립 또는 사설 탐정’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친숙해 있고 업무를 대표하는 명칭이며, 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3.2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업무범위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사를 비롯한 치안 업무를 관(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민간조사로 인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초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태는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조사원의 권한남용과 오용에 대비하여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 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경비업법에 포함시키는 이인기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조사관의 위치가 경비회사의 한 부서 직원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고 민간조사관의 위상도 낮게 보이므로[28],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인 외에 개인도 영위 가능하게 하여 무자본 민간조사 인력의 제도권 내로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자 간 양질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이 있다.

첫째, 이상배 의원 안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서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 등의 공권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범죄수사는 경찰 및 검찰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업무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 설정하게 되면 국가수사기관의 활동에 제한을 할 수 있고 민간

조사업의 성격을 확대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가 조사라는 행위에 국한하여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수사기관이 행하는 범죄수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조사란 범죄수사의 전 단계에서 각종 증거나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수사와는 현격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서 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에 한해 가족이 의뢰한 경우에 소재탐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성인 가출인에 대해서는 소재 탐지 후 본인의 동의하에 의뢰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하고 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3.3.3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형태

입법 방향상의 쟁점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명칭을 국민들이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조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경찰업무분야가 민간경비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업을 규제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인기 의원은 「경비업법」 제2조의 정의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인기 의원안 제5장은 민간조사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제20조), 자격시험(21조), 의무(22조), 교육(2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행정처분 등에서 경비업허가의 취소(24

조), 민간조사관 자격취소(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민간경비업체가 민간조사업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사업의 진입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모두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조사사업의 주요업무는 실종자 소재파악, 사람의 사망·상해 등 피해원인의 조사, 범죄발생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경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민간조사와 민간경비 등이 종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와 민간방범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관리감독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이 관리·감독기관이 되면 경찰이 민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업무영역이 체계화되는 것이므로 경찰권의 비대화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형태는 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난립과 모순을 막고 민간조사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한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넓은 의미의 민간보안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경찰의 치안행정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민간조사산업은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관리운영상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3.3.4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감독기관

민간조사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

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업의 개방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입법내용상의 쟁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상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어느 기관이 관리감독기관이 되는 것인가이다. 경찰청은 민간조사의 성격이 준사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준사법 작용으로 본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민간조사사업의 관리감독으로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의 일부 영역이므로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의 필요성,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필요성,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육성 필요성, 전국에 걸친 현장성과 광범위성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 권력의 분산과 견제에 의하여 검찰의 집중화를 방지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부가 관리감독 할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법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조율이 용이하며, 법무부 산하 검찰청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민간조사사업의 적절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민간경비의 한 분야인 민간조사업업을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나 조직운영면에도 비효율적이고 민간조사원의 변호사에 대한 종속관계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 기관은 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민간조사사업이 도입될 경우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민간조사원인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3.3.5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자격제도와 자격시험

범죄수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분야이다. 즉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업무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에게만 유난히 엄격



한 자격제한을 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민간조사는 성격상 수단이나 방법의 합법성과 더불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연령이나 자격요건에 있어 비교적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제도는 어떠한 자격증보다도 국민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교육과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는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용이함과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업의 연령요건은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을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서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요건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 시험도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 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공통과목은 형법 민간조사업법 형사특별법등 법률과목과 전문성관련과목 무기사용법 범죄수사기법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에는 각 세분영역별로 보험업법 기업법 사이버 보안관련법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시험의 응시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결격사유만 없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6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교육

민간조사원의 교육 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민간조사원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분야 등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최소 교육시간을 정하여 충분한 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내용은 헌법 형사법 특별법 미행·잠복 요령 인터뷰기술 보고서 작성방법 직업윤리 등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입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교육은 관련 법규와 윤리교육 및 기본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교육은 개정된 법규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첨단 장비의 보급 등에 대한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문 대학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부실화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교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및 요약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아직 불법이라는 오류를 벗지 못함에 따라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사회 전체의 탐정활동에 대한 수요공급 체계가 왜곡되어 불법적·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탐정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국들은 탐정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수요자 부담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불법 및 위법사례 방지, 국가 수사능력 한계의 보완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높이고 있는 대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제, 신고 등록 등 엄격한 국가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쟁점사항을 모아서 선진 외국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까지 마련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민간조사업에 대한 용어 및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민간조사업

의 적정성 도모 및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탐정(探偵)’이란 명칭이 민간조사 업무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게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업무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용이함과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국민간조사원의 교육 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민간조사원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업의 개입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입법 방향상의 쟁점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명칭을 국민들이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민간조사에 관한 입법화 준비상황과 사회적 실태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정치, 법, 탐정관련업 및 시큐리티 산업분야, 학계 등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조사제도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인탐정제도’라는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켜 시행하려면 도입초기부터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조사제도는 민간영역을 활용한 치안서비스라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법·행정영역 등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므로 제도 도입 후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기관·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조규범(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2] 조성구, 김태민, 김동제(2013).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141-162.
- [3] 박동균, 박기범(2013). 미국 민간 조사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위기관리논집, 9(5), 41-56.
- [4] 이투데이뉴스, 2013)
- [5] 조성구, 이주락(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81-205.
- [6] 박동균, 박기범(2013). 미국 민간조사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위기관리논집. 9(5), 41-56.
- [7] 박동균, 이민형(2010). 국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민간경비학회보, 13, 120-148.
- [8] 이동영(2001).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搜查研究수사연구사, 4월호.
- [9] 신관우(2013).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학회, 9(7), 103-122.
- [10] 이상원(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337-365.
- [11] 최현락(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12]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13] 정일석, 박준석, 오세광(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271-299.

[14] 김종식(2011).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 주제 발표 자료집.

[15] 강동욱(2013).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법과정책연구, 13(3), 10-22.

[16] 김승태(2014).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익법학, 15(4), 567-572.

[17] 김원중(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53-72.

[18] 안영규(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일본 탐정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75-86.

[19]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9, 209-229.

[20] 이승주(2006). 한국형 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규범학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93-118.

[21] 이승철(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16-17.

[22] 이영래(2009).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지, 6(1), 31-52.

[23] 이하섭(2012).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1(4), 279-282.

[24] 전대양(2007). 일본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과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305-337.

[25] 장석헌, 송병호(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33, 334-365.

[26] 정일석, 박준석, 서상열(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65-484.

[27] 장현석, 이상원(2014).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전국 규모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경찰학회보, 16(1), 161-190.

[28] 이상원(2008).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

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17, 235-253.

— [ 저 자 소 개 ] —



**노진거 (Jeon Jin-geong)**

2013년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사  
2016년 중부대학교 행정학석사

email : jinkong95@naver.com



**정일홍 (Jeong Il-hong)**

2002년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사  
2004년 부산대학교 체육학석사  
2010년 부산대학교 체육학박사  
2011년~2016.1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email : karateka@hanmail.net